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09호 2016. 8. 30(화)

◀ 훈 령 ▶

-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전부개정규정(제321호) 2

◀ 입법예고 ▶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6-57호) 8

◀ 고 시 ▶

-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제2016-111호) 20

◀ 공 고 ▶

-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제2016-1126호) 43

회								
람								

훈 령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8월 30일

포항시 훈령 제321호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전부개정규정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장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요령)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포항시 공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직인을 찍고 그 명의 바로 밑에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제2조에 따라 ○○○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제4조(예외규정) 위임사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각 담당관, 팀·과장, 구청장”을 “각 담당관, 과장, 구청장”으로 하며, 제9조제5항제1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포항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포항시 영세농자립화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포항시 국제교류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포항시 소하천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⑥ 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포항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⑧ 포항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

- ⑩ 포항시 시장선거공약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관실”로,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⑪ 포항시 기획조정 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제4조 및 제6조,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⑫ 포항시 민원실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새마을민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⑬ 포항시 물가담당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노동과”를 “일자리경제노동과”로 한다.
- ⑭ 포항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출산보육과장”으로 한다.
- ⑮ 포항시 간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각 국장 및 담당관·과장”을 “각 본부장·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⑯ 포항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국·담당관·과 업무조정 통제”를 “본부·국·담당관·과 업무조정 통제”로 한다.
- ⑰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본부장·국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소·원장”을 “본부·국·소·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사무내부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관 련 법 령
일자리 경제노동과	1.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에 한함) 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취소 다.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라. 담배소매인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재정관리과	1.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동산 압류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환경식품 위생과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부과취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도시녹지과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관련 사항(허가·신고·협의 등) (단, 기업허가관련 민원사항은 제외. 이 경우 기업허가 관련 민원사항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업관련 허가사항에 한한다) 2.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목재펠릿보일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산지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53조부터 제57조
예산법무과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행정과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농업정책과	1. 수리계 경비부과 인가 2. 농업기반시설(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 시설을 제외한다)의 등록 3. 농업기반시설물 용도폐지 4.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단,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3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5. 국유재산법에 의한 다음 사항 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 나.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용도폐지 마.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6.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사항 가. 예정지 조사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 폐지승인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6조 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사무내부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일자리 경제노동과	1. 담배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취소 다.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라. 담배소매인에 대한 명령이나 조치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재정관리과	1.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동산 압류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읍·면장
수산진흥과	1. 연안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안어업의 허가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다. 연안어업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라. 연안어업의 변경사항 허가 마. 연안어업의 제한 또는 취소, 조건 바. 연안어업의 과징금 처분 2.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수리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노인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읍·면·동장
자치행정과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읍·면·동장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57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 별표 1 삭제)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6. 8. 23 ~ 2016. 9. 13(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505, FAX 270-3470, E-mail : kong7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붙임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할 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집중강우시”를 “집중강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빗물등”을 “빗물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뒷채움”을 “뒤채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 한하도록”을 “경우에만 하도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생되지”를 “발생하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덮개”를 “덮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행위지역안으로”를 “행위지역 안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를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행위지역안”을 “행위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200밀리미터”를 “200밀리미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개발행위 허가사무를 <u>처리함에 있어</u>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다른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제2조(적용) ----- <u>처리할 때</u>----- ----- ----- -----.</p>
<p>제3조(일반적인 검토사항) ① 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임상, 경사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3조(일반적인 검토사항) ① ----- ----- -----.</p>
<p>1. (생 략) 2. 경사도는 동지역은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30도 미만이어야 하며, 경사도 측정은 <u>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u></p>	<p>1. (현행과 같음) 2. ----- ----- <u>「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u></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u>의하고</u>,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는 「건축법」을 따른다. 다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의 절차와 같이 하여야 한다.</p>	<p>③ ----- ----- ----- ----- ----- <u>따르고</u>----- ----- -----.</p>

다.

③ (생략)

④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붙이도록 한다.

3. (생략)

4.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 라. (생략)

마.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바. 석축은 물이 숫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신청
청시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 빗물 등
-----.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따른다.

바. -----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6조(토석채취) ①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토석채취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이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동식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 6. (생략)

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②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 뒷채움 -----

-----.

제6조(토석채취) ① ----- 허가시 -----

-----.

1. -----

따른 -----
-----.

2. ----- 신청 -----
시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만 -----
하도록 -----
-----.

③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물건적치) 물건적치로 인한 위
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이 주변지
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생략)

4.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
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
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
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 9. (생략)

제9조(시설기준) ① 해당 행위가 도로·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
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
18조, 「하수도법」 제12조, 「도로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
자전용으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해서는 아니된다.

4.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물건적치) -----

-----.

1. (현행과 같음)

2. ----- 발생시 -----
-----.

3. (현행과 같음)

4. ----- 발생시 -----
-----.

5. -----
----- 발생하지 -----
-.

6. ~ 9.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기준)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아니 된다.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생략)

7.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8.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그 밖에 공공의 수역에 연결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5. -----

----- 아니 된다.

6. (현행과 같음)

7. -----

----- 하여야 한다.

8. -----
----- 덮개 -----
-----.

9. -----
----- 행위지역 안으로 -----
----- 따라 -----

-----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 -----

-----.

10. -----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생략)

12.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4. (생략)

15.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6.·17. (생략)

② (생략)

행위지역 안-----

-----.

11. (현행과 같음)

12. -----
----- 따르고-----

-----.

13.·14. (현행과 같음)

15. -----

----- 200밀리미터 -
-----.

16.·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111호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58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 년 8월 22일

포 항 시 장

- 1. 관 광 지 명 : 호미곶 관광지
- 2. 위 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 일원
- 3. 최 초 지 정 일 자 : 2003. 11. 6(경상북도 고시 제2003-388호)
- 4. 최종조성계획변경 : 2015. 11. 19(경상북도 고시 제2015-395호)
- 5. 승 인 면 적 : 221,366㎡

6. 사 업 기 간 : 2000 ~ 2018

7. 사 업 시 행 자 : 포 항 시 장

8. 경미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시설구분	시설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부지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구성비 (%)
합 계		221,366	100.0	-	221,366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 도로및광장, 주차장 - 해맞이광장 - 관리초소/화장실 - 화장실/매점 - 하수종말처리장	76,801	34.7	-	76,801	34.7
숙박시설 지구	- 콘도, 호텔	22,080	10.0	-	22,080	10.0
상가시설 지구	- 상가	8,707	3.9	8,707	8,707	3.9
휴양·문화 시설지구	- 새천년기념관, - 관광전시관 - 청소년문화시설 - 야외무대, 조형물 - 풍력발전기, 등대전시시설	22,623	10.2	-	22,623	10.2
운동·오락 시설지구	- 유희시설, 비치돔	24,450	11.0	-	24,450	11.0
기타시설 지구	- 녹지, 사빈지 - 밀레니엄숲	66,705	30.2	-	66,705	30.2

9. 변경사유

- 관광지내 상가시설지구의 조성계획선과 지번별 지적선의 불합치로 인한 상가개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상가시설지구 전체 면적의 변경 없이 상가시설지구내 조성계획선을 지번별 지적선과 합치 변경하여 관광지 개발을 촉진코자함.

10.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 - 붙임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

12.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변경 결정 취지

- 관광진흥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 변경으로
- 호미곶 관광지 조성사업의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민자 유치시설(상가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 또한,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1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13. 고시 관계도면의 상세한 게재는 생략하고,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

(☎ 054-270-28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14.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054-270- 28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경미변경) 조서 >

□ 세부시설 결정(경미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간폐율 (%)	용적률 (%)	동수 (동)	층수 (층)	비고
기정				221,366	44,126	142,975	-	-	25	-	
변경				221,366	44,126	142,975	-	-	25	-	
공공편익시설											
기정		소계		76,800.48	1,368	4,383	-	-	4	-	
기정	1-1	도로및광장		30,682	-	-	-	-	-	-	
기정	1-1-1	도로	-	25,550	-	-	-	-	-	-	
기정	1-1-2	광장	대보리 213-3번지 일원	5,132	-	-	-	-	-	-	
기정	1-2	주차장		27,863	-	-	-	-	-	-	
기정	1-2-1	주차장㉓	대보리 286-5번지 일원	4,892	-	-	-	-	-	-	
기정	1-2-2	주차장㉔	대보리 295-1번지 일원	7,604	-	-	-	-	-	-	
기정	1-2-3	주차장㉕	대보리 212-6번지 일원	10,703	-	-	-	-	-	-	
기정	1-2-4	주차장㉖	대보리 186-1번지 일원	4,664	-	-	-	-	-	-	
기정	1-3	해맞이광장	대보리 228번지 일원	14,174	-	-	-	-	-	-	
기정	1-4	광장	대보리 286-1번지 일원	156.48	-	-	-	-	-	-	건물철거
기정	1-5	화장실/매점		640	383	383	-	-	2	-	
기정	1-5-1	화장실/매점①	대보리 287-1번지 일원	462	277	277	60.0	60.0	1	1층이하	
기정	1-5-2	화장실/매점②	대보리 213-2번지 일원	178	106	106	60.0	60.0	1	1층이하	
기정	1-6	하수종말처리장	대보리 287-5번지 일원	3,285	985	4,000	30.0	40.0	1	1층이하	
숙박시설											
기정		소계		22,080	13,248	58,000	-	-	4	-	
기정	2-1	콘도	대보리 196번지 일원	14,580	8,748	38,000	60.0	150.0	3	6층이하	지상층 21,870㎡ 지하층 16,130㎡
기정	2-2	호텔	대보리 234번지 일원	7,500	4,500	20,000	60.0	150.0	1	5층이하	지상층 11,250㎡ 지하층 8,750㎡
상가시설											
기정		소계		8,707	5,220	13,057	-	-	8	-	
변경		소계		8,707	5,220	13,057	-	-	8	-	
기정	3-1	상가		8,707	5,220	13,057	-	-	8	-	
기정	3-1-1	상가①	대보리 286-10번지 일원	626	375	939	60.0	150.0	1	3층이하	
기정	3-1-2	상가②	대보리 286-11번지 일원	551	330	826	60.0	150.0	1	3층이하	
변경	3-1-2	상가②	대보리 286-11번지 일원	501	300	751	60.0	150.0	1	3층이하	50.0(감소)
기정	3-1-3	상가③	대보리 286-37번지 일원	769	461	1,153	60.0	150.0	1	3층이하	
변경	3-1-3-1	상가③-1	대보리 286-37번지 일원	395	237	592	60.0	150.0	1	3층이하	19.0(감소)
변경	3-1-3-2	상가③-2	대보리 286-13번지 일원	355	213	532	60.0	150.0	1	3층이하	
기정	3-1-4	상가④	대보리 286-28번지 일원	559	335	838	60.0	150.0	1	3층이하	
변경	3-1-4	상가④	대보리 286-28번지 일원	554	332	831	60.0	150.0	1	3층이하	5.0(감소)
기정	3-1-5	상가⑤	대보리 286-36번지 일원	603	361	904	60.0	150.0	1	3층이하	
변경	3-1-5	상가⑤	대보리 286-36번지 일원	677	405	1015	60.0	150.0	1	3층이하	74.0(증가)
기정	3-1-6	상가⑥	대보리 232-9번지 일원	821	492	1,231	60.0	150.0	1	3층이하	
기정	3-1-7	상가⑦	대보리 232-5번지 일원	3,751	2,250	5,626	60.0	150.0	1	3층이하	
기정	3-1-8	상가⑧	대보리 199-1번지 일원	1,027	616	1,540	60.0	150.0	1	3층이하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동)	층수 (층)	비고
휴양·문화시설											
기정		소계		22,623.19	9,620	18,635	-	-	7	-	
기정	4-1	기념관(전망대)	대보리 286-7번지 일원	4,328	2,595	7,920	60.0	150.0	1	4층이하	
기정	4-2	관광전시관	대보리 215-1번지 일원	2,913	1,165	2,330	40.0	80.0	1	3층이하	
기정	4-3	청소년문화시설	대보리 214번지 일원	8,886	3,554	3,554	40.0	40.0	1	2층이하	
기정	4-4	야외무대	대보리 226번지 일원	1,038.19	622	622	60.0	60.0	1	2층이하	
기정	4-5	조형물		1,049	-	-	-	-	-	-	
기정	4-5-1	조형물①	대보리 222-4번지 일원	300	-	-	-	-	-	-	
기정	4-5-2	조형물②	대보리 213-1번지 일원	494	-	-	-	-	-	-	
기정	4-5-3	조형물③	대보리 216번지 일원	255	-	-	-	-	-	-	
기정	4-6	풍력발전기	대보리 290-1번지 일원	200	-	-	-	-	-	-	
기정	4-7	등대전시시설	대보리 231번지 일원	4,209	1,684	4,209	40.0	100.0	3	3층이하	
운동·오락시설											
기정		소계		24,450	14,670	48,900	-	-	2	-	
기정	5-1	유흥시설	대보리 195-2번지 일원	13,135	7,881	26,270	60.0	150.0	1	4층이하	
기정	5-2	비치돔	대보리 204-1번지 일원	11,315	6,789	22,630	60.0	150.0	1	4층이하	
기타시설											
기정		소계		66,705.33	-	-	-	-	-	-	
기정	6-1	녹지		38,073.33	-	-	-	-	-	-	
기정	6-1-1	녹지-1	-	12,176	-	-	-	-	-	-	
기정	6-1-2	녹지-2	-	4,700	-	-	-	-	-	-	
기정	6-1-3	녹지-3	-	5,471	-	-	-	-	-	-	
기정	6-1-4	녹지-4	-	1,559	-	-	-	-	-	-	
기정	6-1-5	녹지-5	-	3,543	-	-	-	-	-	-	
기정	6-1-6	녹지-6	-	322	-	-	-	-	-	-	
기정	6-1-7	녹지-7	-	321	-	-	-	-	-	-	
기정	6-1-8	녹지-8	-	1,317.33	-	-	-	-	-	-	
기정	6-1-9	녹지-9	-	565	-	-	-	-	-	-	
기정	6-1-10	녹지-10	-	393	-	-	-	-	-	-	
기정	6-1-11	녹지-11	-	98	-	-	-	-	-	-	
기정	6-1-12	녹지-12	-	1,675	-	-	-	-	-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동)	층수 (층)	비고
가정	6-1-13	녹지-13	-	472	-	-	-	-	-	-	
가정	6-1-14	녹지-14	-	641	-	-	-	-	-	-	
가정	6-1-15	녹지-15	-	713	-	-	-	-	-	-	
가정	6-1-16	녹지-16	-	858	-	-	-	-	-	-	
가정	6-1-17	녹지-17	-	612	-	-	-	-	-	-	
가정	6-1-18	녹지-18	-	184	-	-	-	-	-	-	
가정	6-1-19	녹지-19	-	144	-	-	-	-	-	-	
가정	6-1-20	녹지-20	-	199	-	-	-	-	-	-	
가정	6-1-21	녹지-21	-	77	-	-	-	-	-	-	
가정	6-1-22	녹지-22	-	389	-	-	-	-	-	-	
가정	6-1-23	녹지-23	-	135	-	-	-	-	-	-	
가정	6-1-24	녹지-24	-	1,509	-	-	-	-	-	-	
가정	6-2	사빈지		10,192	-	-	-	-	-	-	
가정	6-3	밀레니엄숲		18,440	-	-	-	-	-	-	
가정	6-3-1	밀레니엄숲- 1	-	1,841	-	-	-	-	-	-	
가정	6-3-2	밀레니엄숲- 2	-	8,186	-	-	-	-	-	-	
가정	6-3-3	밀레니엄숲- 3	-	8,413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2,449	25,550			가각면적 976m ² 포함
기정	중로	1	1	20	76	1,673	대보리 288-1	대보리 291-1	가각면적 153m ² 포함
기정	중로	1	2	20	33	685	대보리 295-4	대보리 294-2	가각면적 25m ² 포함
기정	중로	1	3	20(5)	290	1,239	대보리 287-5	대보리 295-3	-
기정	중로	2	1	16	232	3,839	대보리 191-4	대보리 201-4	가각면적 127m ² 포함
기정	중로	2	2	16	215	3,447	대보리 188	대보리 214	가각면적 7m ² 포함
기정	중로	2	3	16	290	4,733	대보리 295-5	대보리 232-23	가각면적 93m ² 포함
기정	소로	2	1	8	83	754	대보리 207	대보리 199-3	가각면적 90m ² 포함
기정	소로	2	2	8	98	830	대보리 988-1	대보리 988-1	가각면적 46m ² 포함
기정	소로	2	3	8	228	1,824	대보리 211-1	대보리 287-1	-
기정	소로	2	4	8	109	1,276	대보리 211	대보리 210-10	가각면적 404m ² 포함
기정	소로	2	5	5~8	322	2,066	대보리 234-18	대보리 234-13	-
기정	소로	2	6	8	59	483	대보리 232-23	대보리 234-13	가각면적 11m ² 포함
기정	소로	3	1	7	30	210	대보리 234-18	대보리 234-18	-
기정	소로	3	2	6~11	295	1,972	대보리 201-4	대보리 220-5	-
기정	소로	3	3	6	54	324	대보리 201-4	대보리 201-4	-
기정	소로	3	4	5	35	195	대보리 988-1	대보리 988-1	가각면적 20m ² 포함 (기존상가반영 5m적용)

주) ()는 주진입도로로서 사업지구내의 도로 폭원임.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16	2,449	25,550	3	399	3,597	9	1,636	19,252	4	414	2,701	
중로	기정	6	1,136	15,616	3	399	3,597	3	737	12,019	-	-	-	
소로	기정	10	1,313	9,934	-	-	-	6	899	7,233	4	414	2,701	

< 포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변경) 조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경미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경미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1,366	221,366	221,366	100.0	세부시설(상가) 조서 참조
계획관리지역	221,366	221,366	221,366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호미곶 관광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포 항 시 남 구 호미곶면 대보리 234-1번지 일원	-	221,366	1988.2.1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호미곶 관광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 획 구 역	포 항 시 남 구 호미곶면 대보리 234-1번지 일원	221,366	221,366	221,366	1988.2.16	

II. 도시지역 외 계획결정(경미변경)및 지형도면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시설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1,367	-	221,366	100.0	
공공시설용지	76,801.48	-	76,800.48	34.7	
관광·휴양시설용지	77,860.19	77,860.19	77,860.19	35.1	세부시설(상가) 조서 참조
녹지용지	66,705.33	-	66,705.33	30.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 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6	2,449	25,550	3	399	3,597	9	1,636	19,252	4	414	2,701	
중로	기정	6	1,136	15,616	3	399	3,597	3	737	12,019	-	-	-	
소로	기정	10	1,313	9,934	-	-	-	6	899	7,233	4	414	2,701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2,449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76	288-1	29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0	특수도로	33	295-4	294-2	보행자전용			
기정	중로	1	3	20(5)	주간선도로	290	287-5	29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6	주간선도로	232	191-4	20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6	주간선도로	215	188	2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6	주간선도로	290	295-5	232-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조간선도로	83	207	199-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보조간선도로	98	988-1	98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228	211-1	287-1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109	211	210-10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2	5	5~8	특수도로	322	234-18	234-13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59	232-23	234-13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30	234-18	234-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11	특수도로	295	201-4	220-5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4	201-4	20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5	국지도로	35	988-1	988-1	일반도로			

주)()는 주진입도로로서 사업지구내의 도로 폭원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27,863	없음	27,863		
기정	A-2-1	주차장A	호미곶면 대보리 286-5번지 일원	4,892	없음	4,892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 5. 5. 30)	
기정	A-2-2	주차장B	호미곶면 대보리 295-1번지 일원	7,604	없음	7,604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 5. 5. 30)	
기정	A-2-3	주차장C	호미곶면 대보리 212-6번지 일원	10,703	없음	10,703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 5. 5. 30)	
기정	A-2-4	주차장D	호미곶면 대보리 186-1번지 일원	4,664	없음	4,664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 5. 5. 30)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19,306	없음	19,306		
기정	A-3	호미곶 해맞이 광 장	경관 광장	호미곶면 대보리 228번지 일원	14,174	없음	14,174	1999.6.17 구 역 외 2,559m ² 미 포 함	
기정	A-1-2	광 장	근린 광장	호미곶면 대보리 213-3번지 일원	5,132	없음	5,132		

※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조성된 호미곶 해맞이광장 중 구역외 2,559m²는 미포함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705.33	-	66,705.33		
기정	F	녹지	완충 녹지	전지역	66,705.33	-	66,705.33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5. 5. 30)	

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285	-	3,285		
기정	A-6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호미곶면 대보리 287-5번지 일원	3,285	-	3,285	포항시고시 제2005-410호(2005. 5. 30)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합계		221,366	59개 획지	221,366	

• 공공시설용지

-	-	-	11개 획지	76,800.48	
A-1-1	-	-	A-1-1	25,550	도로
A-3	-	-	A-3	14,174	해맞이광장
A-1-2	-	-	A-1-2	5,132	광장
A-4	-	-	A-4	156.48	광장
A-2-1	-	-	A-2-1	4,892	주차장A
A-2-2	-	-	A-2-2	7,604	주차장B
A-2-3	-	-	A-2-3	10,703	주차장C
A-2-4	-	-	A-2-4	4,664	주차장D
A-6	-	-	A-6	3,285	하수종말처리장
A-5-1	-	-	A-5-1	462	화장실/매점1
A-5-2	-	-	A-5-2	178	화장실/매점2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변경	
			획지번호	면적(㎡)	면적(㎡)	비고(용도)
• 관광·휴양시설용지						
-	-	-	20개 획지	77,860. <u>19</u>		
B-1	-	-	B-1	14,580	14,580	콘도
B-2	-	-	B-2	7,500	7,500	호텔
C-1	-	-	C-1	626	626	상가1
C-2	-	-	C-2	551	501	상가2
C-3	-	-	C-3-1	769	395	상가3-1
			C-3-2		355	상가3-2
C-4	-	-	C-4	559	554	상가4
C-5	-	-	C-5	603	677	상가5
C-6	-	-	C-6	821	821	상가6
C-7	-	-	C-7	3,751	3,751	상가7
C-8	-	-	C-8	1,027	1,027	상가8
D-3	-	-	D-3	8,886	8,888	청소년문화시설
E-1	-	-	E-1	13,135	13,135	유희시설
E-2	-	-	E-2	11,315	11,315	비치둑
D-1	-	-	D-1	4,328	4,328	새천년기념관
D-2	-	-	D-2	3,168	3,168	관광전시관
D-4	-	-	D-4	1,038. <u>19</u>	1,038.19	야외무대
D-5-1	-	-	D-5-1	300	300	조형물1
D-5-2	-	-	D-5-2	494	494	조형물2
D-6	-	-	D-6	200	200	풍력발전기
D-7	-	-	D-7	4,209	4,209	등대전시시설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면적(㎡)	
• 녹지용지					
-	-	-	28개 획지	66,705.33	
F-1-1	-	-	F-1-1	12,176	녹지1
F-1-2	-	-	F-1-2	4,700	녹지2
F-1-3	-	-	F-1-3	5,471	녹지3
F-1-4	-	-	F-1-4	1,559	녹지4
F-1-5	-	-	F-1-5	3,543	녹지5
F-1-6	-	-	F-1-6	322	녹지6
F-1-7	-	-	F-1-7	321	녹지7
F-1-8	-	-	F-1-8	1,040.09	녹지8
F-1-9	-	-	F-1-9	842.24	녹지9
F-1-10	-	-	F-1-10	393	녹지10
F-1-11	-	-	F-1-11	98	녹지11
F-1-12	-	-	F-1-12	1,675	녹지12
F-1-13	-	-	F-1-13	472	녹지13
F-1-14	-	-	F-1-14	641	녹지14
F-1-15	-	-	F-1-15	713	녹지15
F-1-16	-	-	F-1-16	858	녹지16
F-1-17	-	-	F-1-17	612	녹지17
F-1-18	-	-	F-1-18	184	녹지18
F-1-19	-	-	F-1-19	144	녹지19
F-1-20	-	-	F-1-20	199	녹지20
F-1-21	-	-	F-1-21	77	녹지21
F-1-22	-	-	F-1-22	389	녹지22
F-1-23	-	-	F-1-23	135	녹지23
F-1-24	-	-	F-1-24	1,509	녹지24
F-2-1	-	-	F-2-1	1,841	밀레니엄숲1
F-2-2	-	-	F-2-2	8,186	밀레니엄숲2
F-2-3	-	-	F-2-3	8,413	밀레니엄숲3
F-1-25	-	-	F-1-25	10,192	사빈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4	A-4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3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속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관리초소/화장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최저층수	-	
				배 치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권장
				색 채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A-5-1	A-5-1	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화장실/매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최저층수			-	
				배 치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5-2	A-5-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3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속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화장실/매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최저층수	-
		배 치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A-6	A-6	용도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최저층수			-
배 치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화관목류의 생물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B-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탁시설, 제27호 바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B-2	B-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탁시설, 제27호 바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숙박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가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 C-8	C-1 ~ C-8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상가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D-1	D-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새천년기념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2	D-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27호 바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관광전시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D-3	D-3	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청소년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는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4	D-4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야외무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D-7	D-7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등대전시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E-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운동오락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유원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E-2	E-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27호 바목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운동오락시설지구내 허용시설) - 물놀이형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배치, 통풍 및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자연지형을 따른 배치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경사지붕 권장 •담장 : 조경수 식재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원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전체면적의 20% 범위 이내로 구성 		
건축선				-		

3)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중로 1류 1호선 구간	호미곶 관광지 주출입구로 활용	
	중로 1류 3호선 구간	호미곶 관광지 진입을 위한 가감속차선으로 활용	
	중로 2류 1호선 구간	호미곶 관광지 부출입구로 활용	
	중로 2류 2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중로 2류 3호선 구간	호미곶 관광지 부출입구로 활용	
	소로 2류 1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소로 2류 2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소로 3류 1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소로 3류 3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소로 3류 4호선 구간	시설지간 연결도로로 활용	
보행자 출입구	중로 1류 2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소로 2류 3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소로 2류 4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소로 2류 5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소로 2류 6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소로 3류 2호선 구간	시설지간 주보행자 통로로 활용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1126호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경상북도고시 제2007-105호(2007.10.11.) 및 포항시고시 제2015-154호(2015.12.28.)로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인가된 우리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 공람을 실시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6일

포 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시행자 :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 나. 면 적 : 25,315.00㎡

4. 정비사업 변경계획(안)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정 (2015.12.28. 변경인가분)	금회 변경	비 고
대지면적	23,603.00㎡	23,603.00㎡	-
세 대 수	659 세대	659 세대	-
건 폐 율	27.18 %	26.84 %	감) 0.34%
건축면적	6,415.3069 ㎡	6,335.0642 ㎡	감) 80.2427 ㎡
용 적 륜	299.1832 %	299.7521 %	증) 0.5689%
연 면 적	95,272.4205㎡	95,673.0162㎡	증) 400.5957 ㎡
규 모	지하2층~지상24층 13개동	지하2층~지상23층 13개동	감) 1 개 층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공동 이용 시설	경비실	28.08	28.08	-
	관리사무소	129.68	87.29	감) 4 2 . 3 9 ㎡
	MDF실	44.9871	34.70	감) 1 0 . 2 8 7 1 ㎡
	방재실	36.8349	42.4000	증) 5 . 5 6 5 1 ㎡
	전기/펌프실	424.3511	489.6444	증) 6 5 . 2 9 3 3 ㎡
	경로당	129.68	129.69	증) 0 . 0 1 ㎡
	주민공동시설	79.1435	83.02	증) 3 . 8 7 6 5 ㎡
	어린이놀이터	550.52	550.52	-
	어린이집	158.97	159.0960	증) 0 . 1 2 6 ㎡
	작은도서관	199.2744	159.03	감) 4 0 . 2 4 4 4 ㎡
	휴게시설(옥외)	70.1784	70.1784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5	20~23	보조 간선 도로	2,220	대로1-1	대로2-9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6-378호 (‘06.10.16)
기정	중로	3	98	12	국지 도로	108	중로1-55	소로2-258	일반 도로		포항고 제93-171호 (‘93.7.26)	포항시고시 제2014-146호 (‘14.12.31)
기정	소로	2	258	6~8.5	국지 도로	348	소로3-515	소로3-324	일반 도로			포항시고시 제2014-146호 (‘14.12.31)
기정	소로	3	322	6~8	국지 도로	136	중로 1-55 특량146-4답	소로2-258 특량150-13대	일반 도로			포항시고시 제2015-22호 (‘15.3.23)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 관계도서 : 생략(포항시 주택과 비치)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포항시청 주택과(☎054-270-3604)
-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참고사항 :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된(안)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될 수 있음.

붙임 공람의견서 1부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공람기간	2016. 08. 26 ~ 2016. 09. 09			
대 상 물 건 지	건 물			
	토 지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의견사항

○

-

○

-